

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진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9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4.

발 의 자 : 이진분, 최진호, 한명훈
설호영, 현옥순, 최찬규
이지화, 황은화, 유재수
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일부 조항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재정비
(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, 안 제14조, 안 제15조)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신설(부칙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표 협의체”를 “대표협의체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알려야한다”를 “알려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에게,”를 “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”로 하고, “협력을”을 “협조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전문가·관계인 등”을 “관계인 등”으로, “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·상록수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p> <p>5. 삭제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6조(동 협의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----- -----</p> <p>5. 삭제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동 협의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사무국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(이하“회의”라 한다)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1. ~ 4. (생략)

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

④ ----- 위원장과 부위원장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
----- . -----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무국) ① -----

----- 대표협의체 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의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알려야 한다. -----

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4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

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회의 수당) 각 협의체의 회의

등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<신설>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

-----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-----
--- 협조를 -----
-----.

제15조(회의 수당) -----

-----관계인 등-----
-----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
-----예산의 범위에서-----

-----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

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